마 감 속 보

# 環境保全法中 改正法律(案)

**1. 개정사유**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에까지 확대하고, 타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야생동·식물류를 함부로 채취·포획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을 도입하여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하는 한편, 비산분진을 발생하는 사업은 비산분진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동차 연료첨가제와 합성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의 문제점을 보완·개정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법률의 현실적응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민간의 사업에까지 확대함. (안 제 5 조)

나.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야생동·식물류로서 그 보전이 필요한 동·식물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동·식물류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는 채취·포획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제협약에 의하여 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류의 수출입시에는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 9 조의 2)

다.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변환경에 현저히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 조제 2 항)

라.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고, 그 부과기간을 조정함.(안 제 19 조의 2)

마. 배출시설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측정대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의 취소요건을 정함.(안 제 22 조의 2)

바. 비산분진을 발생하는 사업을 하는자는 이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 26 조의 2)

사. 자동차연료용 첨가제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유해성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 31 조)

아. 합성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의 제조·수입이 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조·수입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 42 조의 3)

자. 과태료부과를 행정기관 부과제도로 전환함.(안 제 69 조의 2)

법률 제 호

**환경보전법중 개정 법률(안)**

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5 호중 "비산 강하하는 미세한 고체상의 입자상 물질"을 "비상 강하하는 입자상 물질"로 하고, 동조 제 8 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에 제 1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의 자극성 있는 기체성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16. "합성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및 화합물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화합물을 말한다.

제 5 조제 1 항중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계획"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계획사업"으로 한다.

제 5 조의 2중 "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자는 그 계획사업"으로 한다.

제 9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9 조의 2(야생동·식물 보호) ①환경청장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수산업별,산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등 동물류와 식물류(이하 "미보호 야생동·식물"이라 한다)로서 그 보전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및 멸종방지를 위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미보호 야생동·식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고시하는 동·식물(이하 "특정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은 채취·포획·이식·수출·가공·보관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미보호 야생동·식물중 국제협약에 의하여 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류 또는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4 조제 1 항중 "악취발생물"을 "악취"로 한다.

제 15 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5 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한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설의 일부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로써 변경허가에 갈음한다.

②환경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으로 인하여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변환경에 현저히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제 14 조의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또는 제 15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 등이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 3 항의 방지시설은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일부 또는 경미한 사항의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자는 동일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생활하수를 폐수엽 병합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오들청소법 제 15 조 또는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이나 분뇨정화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 17 조중 "아니하거나 제 16 조의 2 제 2 항의 규제에 의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 19 조의 2 제 1 항중 "이전명령을 받은 후"를 "이전명령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로부터"로 하고, 동조 제 3 항중 "배출부과금은"을 "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 으로 한다.

제 22 조제 1 항중 "지정하는 자"를 "사업자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 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 "제 1 항의 자가측정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등"으로 한다.

제 22 조의 2 를 제 22 조의 3 으로 하고 제 22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2 조의 2 (측정대행자의 지정) ①측정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공익상의 필요, 시설의 지역적 분포 또는 측정대행의 수요를 감안하여 측정대행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배출시설의 규모와 구역·측정 항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측정대행자의 준수사항, 측정수수료 기타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⑤제 48 조 및 제 49 조의 규정은 측정대행자의 지정 결격사유 및 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3 조제 2 항을 제 3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자는 배출시설 관리인이 그 관리내용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관리인이 관리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6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6 조의 2 (비산분진의 규제) ①비산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비산분진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산분진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 30 조제 1 항중 "제작하여야 한다"를 "제작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 "제 1 항"을 "제 1 항 및 제 2 항"으로, "검사방법은"을 "검사방법 및 절차는"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 2 항 및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 또는 시험시설의 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자동차 배출가스 장치의 성능이 환경청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 환경청장은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에 대한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 3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1 조(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규제) ①환경청장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보전상 위해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첨가제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②자동차연료용 첨가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와 첨가제를 사용하여 자동차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첨가제의 종류 및 성상, 첨가제의 사용목적 등을 미리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 첨가제로 인한 유해성 등에 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동차연료용 첨가제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첨가제의 제조 또는 사용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신고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32 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2 조의 3 (교통소음방지시설 등) ①환경청

장은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의 신설 또는 확장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정온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 및 철도관리기관의 장에게 교통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로 및 철도관리기관의 장은 교통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계상의 소음방지효과 등에 관하여 미리 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할 교통소음 방지시설의 종류, 사업의 범위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34 조제 1 항중 "당해지역"을 "당해지역안의 소음원"으로 한다.

제 34 조의 2 의 제목중 "통제"를 "제한등"으로 하고, 본문중 "소음규제지역내에서 자동차가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음기 및 소음방지장치의 정비, 대체 또는 그 자동차 사용의 정지등"을 "제 3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규제지역안을 통행하는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 경음기 사용의 금지, 속도의 제한, 우회 등의"로 한다.

제 42 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2 조의 3 (합성화학물질의 관리) ①합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성상 및 안정성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성화학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합성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합성화학물질의 제조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환경청장은 국민보건 또는 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합성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및 유통의 금지 또는 제한을 관계기관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43 조제 1 항중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실시하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의 달성 유지가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방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동조 제 3 항을 제 4 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중 폐수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료를 면제한다.

④시행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제 6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4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6 조 (강제징수) ①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 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43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8 조중 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제 2 호 및 제 3 호로 하고 제 3 호의 "금고이상"을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으로 하여 이를 제 4 호로 하며, 동조에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 4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9 조(등록의 취소등) ①환경청장은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 48 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5. 등록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6.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신규계약에 의한 영업을 계속한 경우
7.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도급받은 방지시설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경우

②환경청장은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방지시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등록된 종류 이외의 방지시설업을 행한 경우
3. 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방지시설의 기술능력 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변경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방지시설업을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 경우
7. 제 1 항제 4 호 내지 제 8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8. 기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 61 조의 2 중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및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 관련사업 및 시설운영"으로 "5년마다 1회이상 환경청장이 지정하는"을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시기와"로 한다.

제 62 조의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2 조의 4 (청문) 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2. 제 22 조의 2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3. 제 49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4. 제 50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 64 조중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검사"를 "이 법에 의한 허가, 등록, 지정 및 검사"로 한다.

제 66 조제 6 호중 "제 30 조"를 "제 30 조제 1 항"으로 한다.

제 67 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 22 조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대행을 한 자
3.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 30 조제 2 항, 제 31 조제 3 항 또는 제 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자
5.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6. 제 5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의 처리업을 한 자
7. 제 58 조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 68 조제 1 호중 "제 22 조제 1 항"을 "제 9 조의 2 제 2 항, 제 22 조제 1 항, 제 23 조중제 2 항 제 31 조제 2 항"으로 하고, 동조 제 2 호중 "제 27 조"를 "제 26 조의 2 제 2 항, 제 27 조"로, "제 31 조"를 "제 30 조제 3 항, 제 31 조제 1 항"으로 한다.

제 69 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 9 조의 2 제 3 항 또는 제 60 조의 3 제 4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 16 조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 2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4. 제 3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 35 조제 1 항, 제 42 조의 3 제 1 항 또는 제 5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과실 또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제 37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 69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9 조의 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 15 조제 1 항 또는 제 2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 23 조의 2 또는 제 61 조의 2 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 일이내에 환경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 2 항의 규정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작용)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아껴쓰는 가정되고 저축하는 국민되자